

학술 연구기금 관리 규정

제정 1998. 9. 3.
제2차 개정 2000.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출연된 학술연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합리적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교에 출연된 교비적립금, 재단출연금, 외부기관 기부금, 연구지원간접경비 사용내규 제3조에 따른 사용후의 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활동 지원이 아닌 기타 목적을 위해 타 기금으로 사용되거나 전용 할 수 없다.

1.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연구비 지급
2. 교내연구비와 관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3. 기타 학술연구활동 지원연구비와 관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제4조(위원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조 2항의 2, 3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다.

제5조(회계) ①회계는 학교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감사)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업무주관부서는 내부감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주관부서) 이 규정에 관련된 사무는 교무처 연구협력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0.10.24)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학년도 제1차 연구교원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